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0나87557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0나875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8가단523141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솔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1. 12. 17.

판결 선고 2022. 1.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8가단52314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영농조합법인,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주채광

판사석준협

판사권양희